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성산)

# 노회찬 보도자료

T 02-784-9130 F 02-788-0357 E omychans@naver.com

담당자 : 신유정 정책비서

010-8452-0108

<2017.7.11.(화)>

## 현직 변호사 72%, “형사재판 공정하지 않다” “판사들의 ‘대법원장 눈치 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 미친다는 응답도 83%에 달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변호사 4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변호사의 72%, ‘대법관 제청절차 수정해야’, ‘법원행정처 축소하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될 것’
- 12년 전 노회찬 원내대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변호사 73%가 ‘형사재판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 ... ‘유전무죄·무전유죄’ 현실 변하지 않았다
- 노회찬, “문재인 대통령, 사법개혁 요구에 부응하는 차기 대법원장 지명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1일(오늘),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사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발전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별첨1: 설문조사 결과 전문, 4페이지 참조)

현직 변호사 458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 51%, ‘전혀 그렇지 않다’ 21%로 총 응답자의 72%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2년 전인 2005년에도 저는 법조인 378명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에도 응답자의 73%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12년이 흘렀는데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실에 대한 변호사들의 응답은 동일했다. 공정한 법원, ‘국민의 법원’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증거”라고 평했다. (##별첨2: 2005년 설문조사 결과: 11페이지 참조)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대법관 제청 절차와 대법원 재판의 독립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임명이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명제에 75%가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59%)” 또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16%)”고 답했고,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이 대법원 재판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명제에는 88%가 “매우 공감한다(34%)” 또는 “공감하는 편이다(54%)”라고 답했다.

나아가, 80%가 넘는 변호사들은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에 대한 판사들의 ‘눈치 보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 눈치 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총 83%가 “매우 그렇다(29%)”, “그런 편이다(54%)”라고 답했으며, “판사의 ‘법원장 눈치 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83%가 “매우 그렇다(27%)”, “그런 편이다(56%)”라고 답했다.

설문조사에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포함되었는데, 특히 최근 법원 개혁의 뜨거운 화두인 ‘법원행정처 축소’ 및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장 제청절차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7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법원행정처 조직을 현재보다 축소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라는 명제에, 응답자의 72%가 “매우 공감한다” 또는 “공감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평판사의 법원행정 참여를 강화하는 ‘사법민주화’ 안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전국법관회의가 대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 라는 질문에는 70%가 “매우 공감한다” 또는 “공감하는 편이다” 라고 답했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해당 법원의 사무 분담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안에 대해서도 71%가 “매우 공감한다” 또는 “공감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설문조사는, 직업적으로 법원의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사법부의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응답한 결과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올 3월 법원행정처가 특정 연구회의 사법개혁 학술행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법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제왕적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법원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적폐’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변호사들이 직접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폐단을 증언한 결과”라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법원’을 만들어 달라는 법원 안팎의 개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역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사법부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1:

# 「사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 발전 방안」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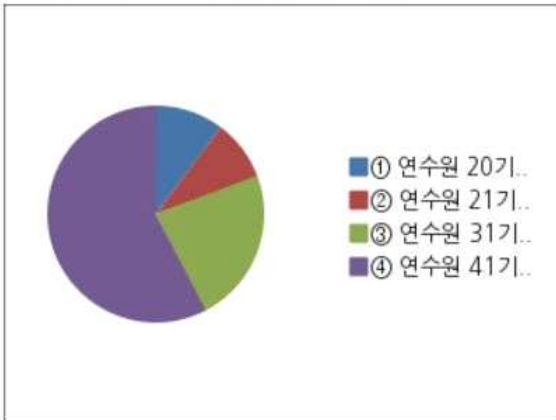
[시행주체] 국회의원 노회찬(창원 성산구) · 대한변호사협회

[시행일시] 2017. 6. 23. ~ 2017. 6. 30.

[총 응답자수] 458명

◎ 응답자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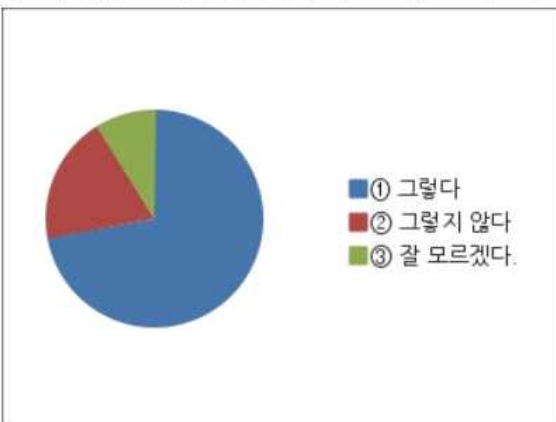
☞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연수원 20기 이상	47	10%
② 연수원 21기부터 30기까지	41	8%
③ 연수원 31기부터 40기까지	106	23%
④ 연수원 41기 이하 및 변호사시험	264	57%

◎ 대법관 제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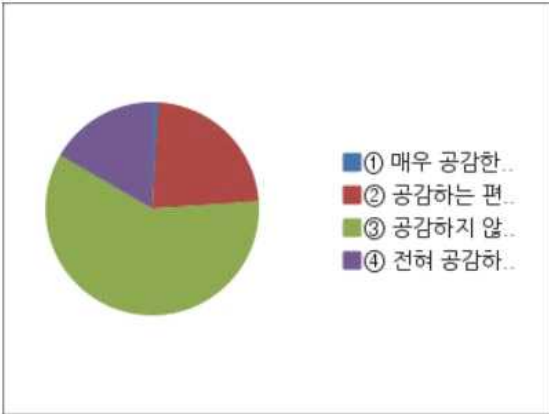
☞ 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관 제청절차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330	72%
② 그렇지 않다	87	18%
③ 잘 모르겠다	4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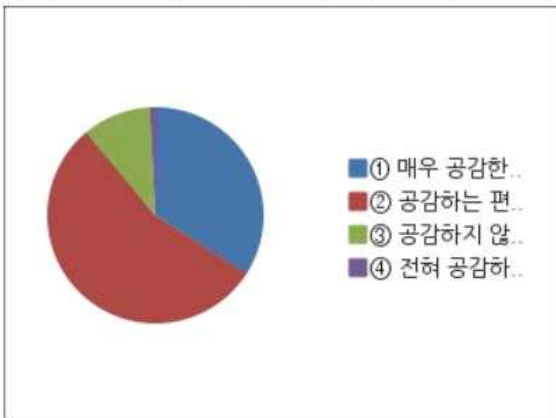
☞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명제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 그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87년 법원조직법 전부개정으로 현행과 같은 대법관 임명절차가 도입된 이후, 대법관 임명은 3권분립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루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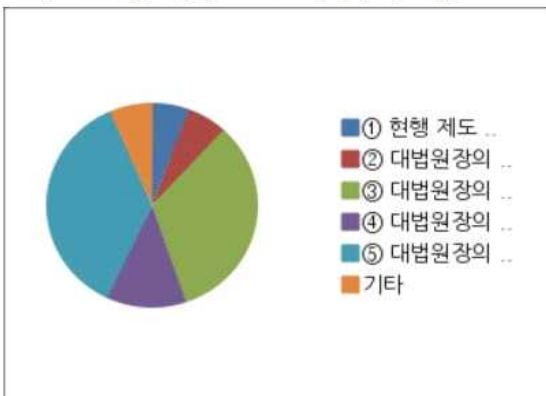
① 매우 공감한다.	4	0%
② 공감하는 편이다.	105	22%
③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273	59%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76	16%

(2)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므로,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이 대법원 재판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① 매우 공감한다.	156	34%
② 공감하는 편이다.	251	54%
③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47	10%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4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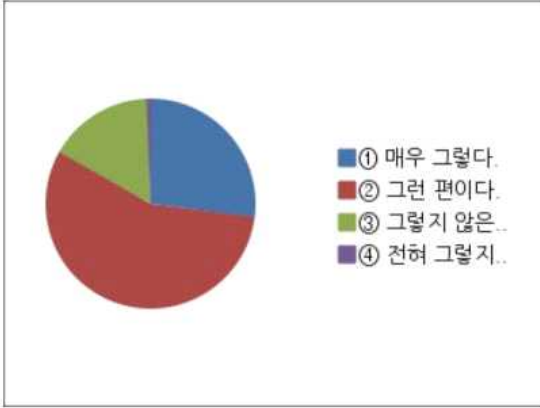
☞ 다음 중 “재판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대법관 임명절차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제도 유지	26	5%
②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 제청권을 폐지하고, 대법관을 국가가 선출	28	6%
③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 제청권을 폐지하고, 법관 대표가 포함된 합의체가 대법관후보를 제청	151	32%
④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유지하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공개	56	12%
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유지하되, 구성의 다양성이 전제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의결기구화	167	36%
기타	3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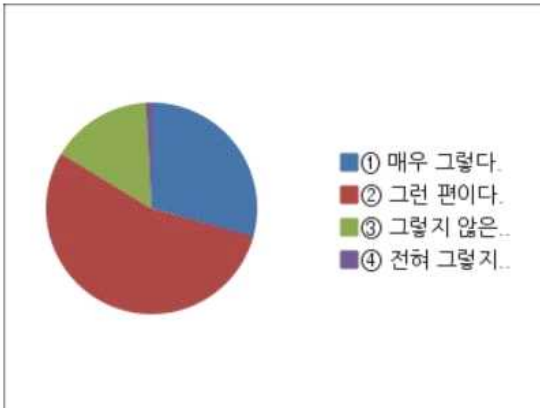
◎ 법관의 '내부로부터의 독립'

☞ 현재 법원장은 각급 법원의 평정·사무분담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장이 이러한 권한을 보유함에 따라, 판사의 '법원장 눈치 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124	27%
② 그런 편이다.	257	56%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74	16%
④ 전혀 그렇지 않다.	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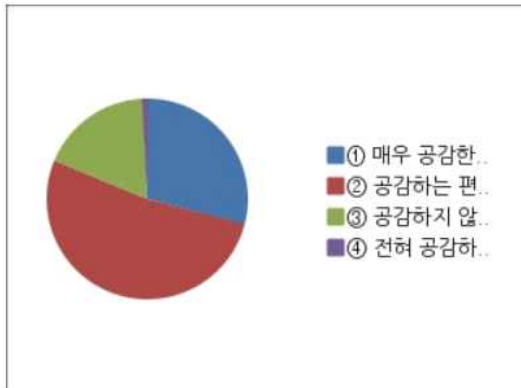
☞ 현재 대법원장은 법관의 인사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귀하는 대법원장이 이러한 권한을 보유함에 따라, 판사의 '대법원장 눈치 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134	29%
② 그런 편이다.	249	54%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71	15%
④ 전혀 그렇지 않다.	4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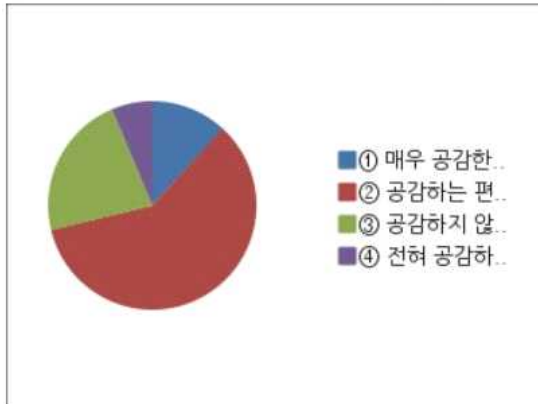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명제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 그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원행정처의 비대화 및 사법관료화가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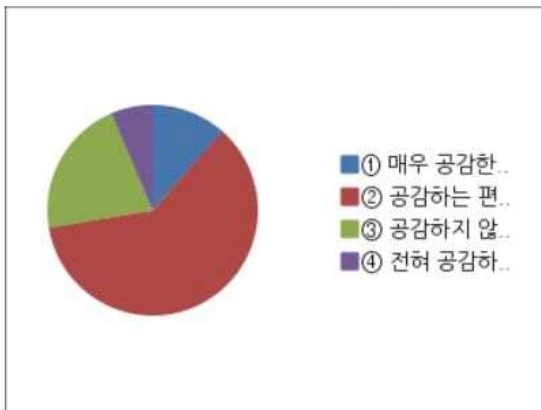
① 매우 공감한다.	133	29%
② 공감하는 편이다.	239	52%
③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82	17%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4	0%

(2)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회의가 대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전보인사 등 사법행정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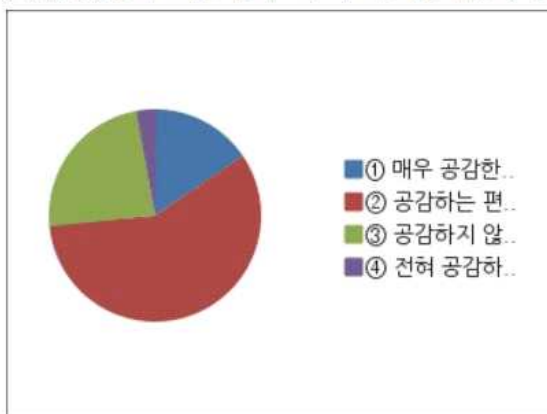
① 매우 공감한다.	54	11%
② 공감하는 편이다.	272	59%
③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103	22%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9	6%

(3) 각급 법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판사회의가 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분담 등 사법행정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



① 매우 공감한다.	53	11%
② 공감하는 편이다.	278	60%
③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98	21%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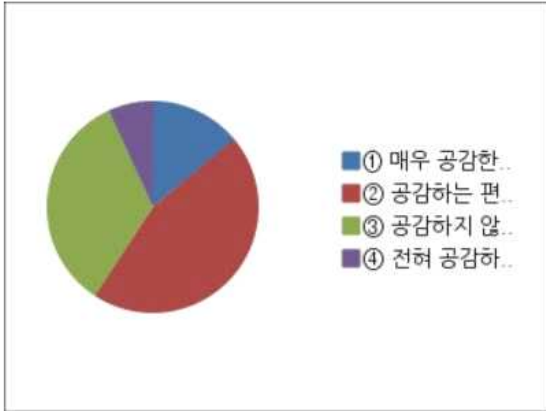
(4) 법원행정처 조직을 현재보다 축소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



① 매우 공감한다.	71	15%
② 공감하는 편이다.	265	57%
③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109	23%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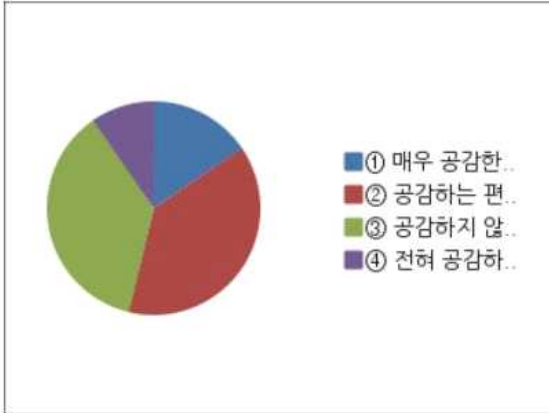


(5)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대법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헌법기구인 사법평의회로 이관한다면 사법의 민주화와 재판의 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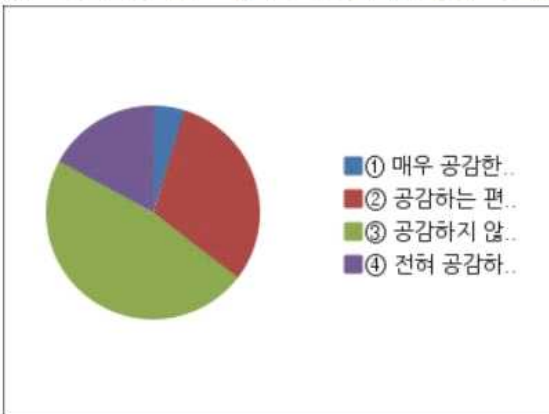
① 매우 공감한다.	64	13%
② 공감하는 편이다.	207	45%
③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156	34%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1	6%

(6) 법관재임용제도를 폐지하고 법관 정년제를 도입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



① 매우 공감한다.	71	15%
② 공감하는 편이다.	175	38%
③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168	36%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4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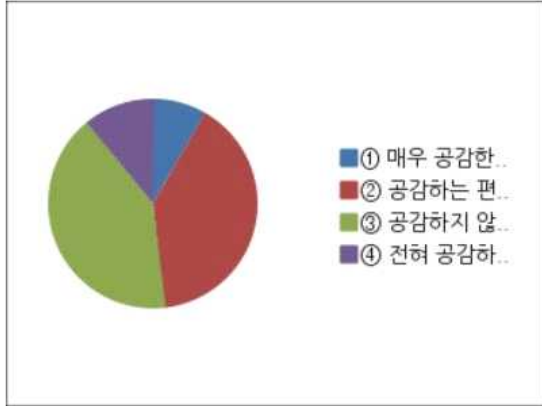
(7) 고등법원 권역별로 판사를 임용하여, 순환전보인사를 제한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



① 매우 공감한다.	22	4%
② 공감하는 편이다.	140	30%
③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218	47%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7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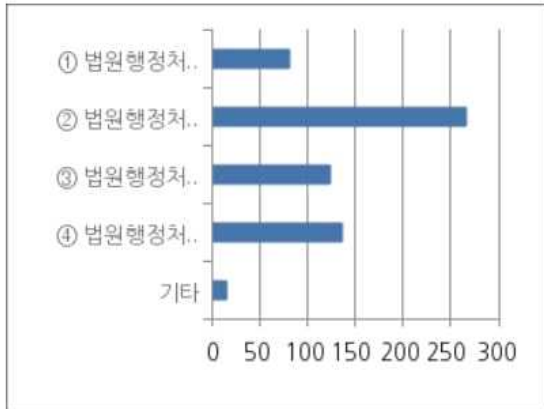


(8) 지방법원장을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호선한다면 재판의 공정성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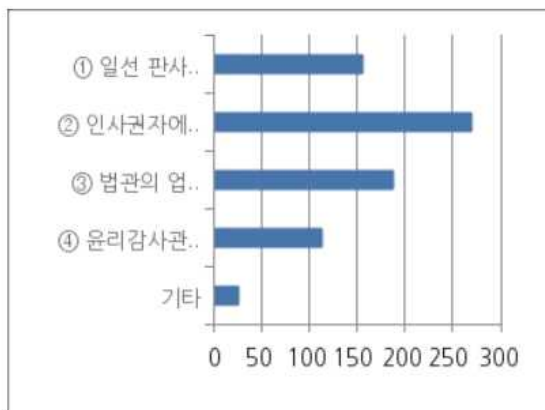
① 매우 공감한다.	38	8%
② 공감하는 편이다.	182	39%
③ 공감하지 않는다.	188	41%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0	10%

☞ 다음 중 “재판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행정처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법원행정처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윤리 감사기능 강화	80	17%
② 법원행정처 조직을 대폭 축소하여 예산·행정 지원업무 등으로 직무범위 제한	266	58%
③ 법원행정처의 직에 판사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공무원이 수행토록 함	124	27%
④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행정처가 가진 사법행정권을 독립적 헌법기구인 사법평의회로 이관하여, 사법행정기구와 사법부를 분리함	135	29%
기타	1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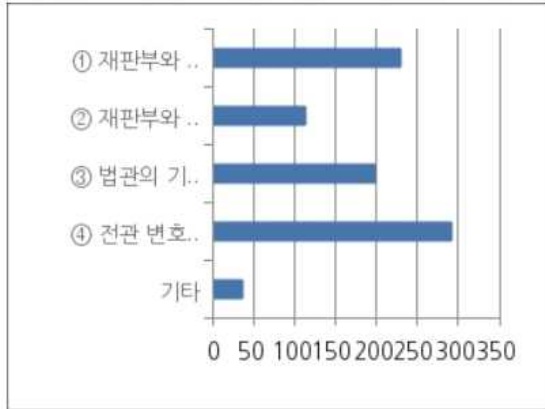
☞ 다음 중 “재판의 독립”을 강화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일선 판사로 구성된 회의체에 법원 인사에 대한 실질적 의견권 부여	155	33%
② 인사권자에 의한 ‘재판의 독립’ 침해 행위를 감시하는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269	58%
③ 법관의 업무평정을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이의 제기절차 신설	188	41%
④ 윤리감사관의 지위 격상 및 기능 강화	113	24%
기타	26	5%

◎ 전관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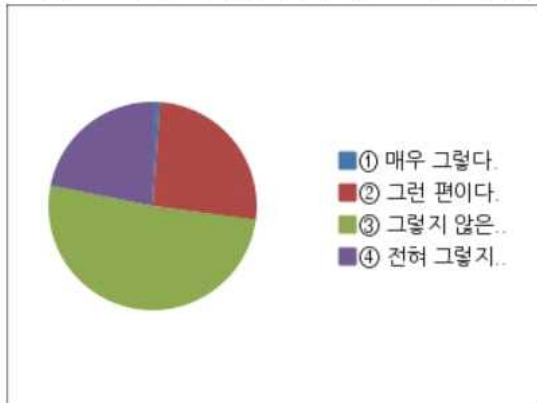
➤ 귀하는 다음 중 전관예우 관행을 막는 데에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재판부와 변호사 사이에 특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사건 재배당	228	49%
② 재판부와 변호사 사이에 특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 공개	112	24%
③ 법관의 기피, 회피사유를 구체화·실질화	198	43%
④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연장 및 수임제한 위반 시 처벌 강화	292	63%
기타	36	7%

◎ 기타 재판의 공정성

➤ 귀하는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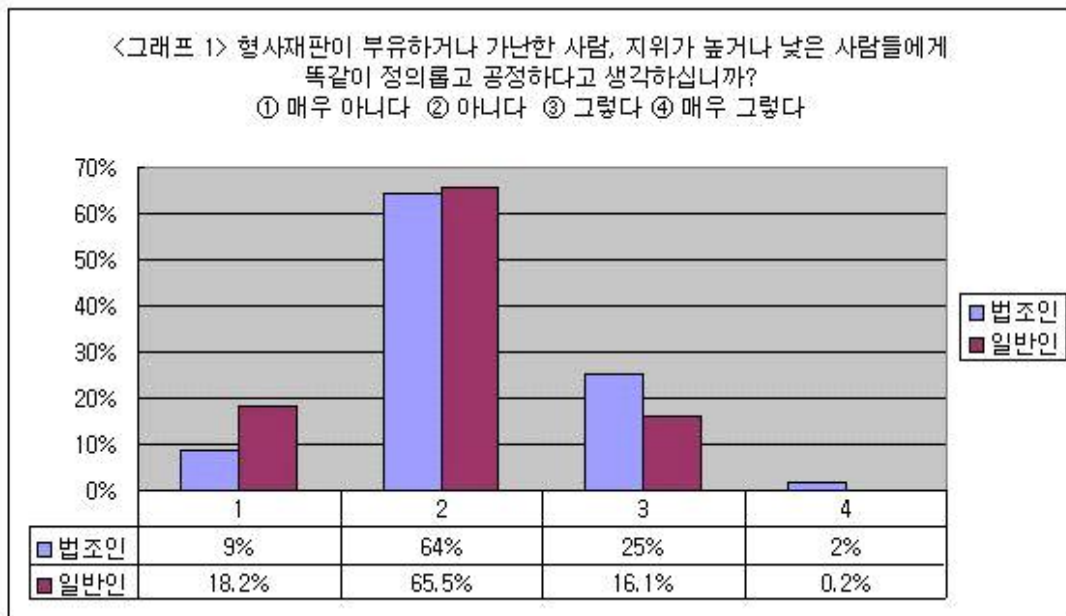


① 매우 그렇다.	5	1%
② 그런 편이다.	119	25%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4	51%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0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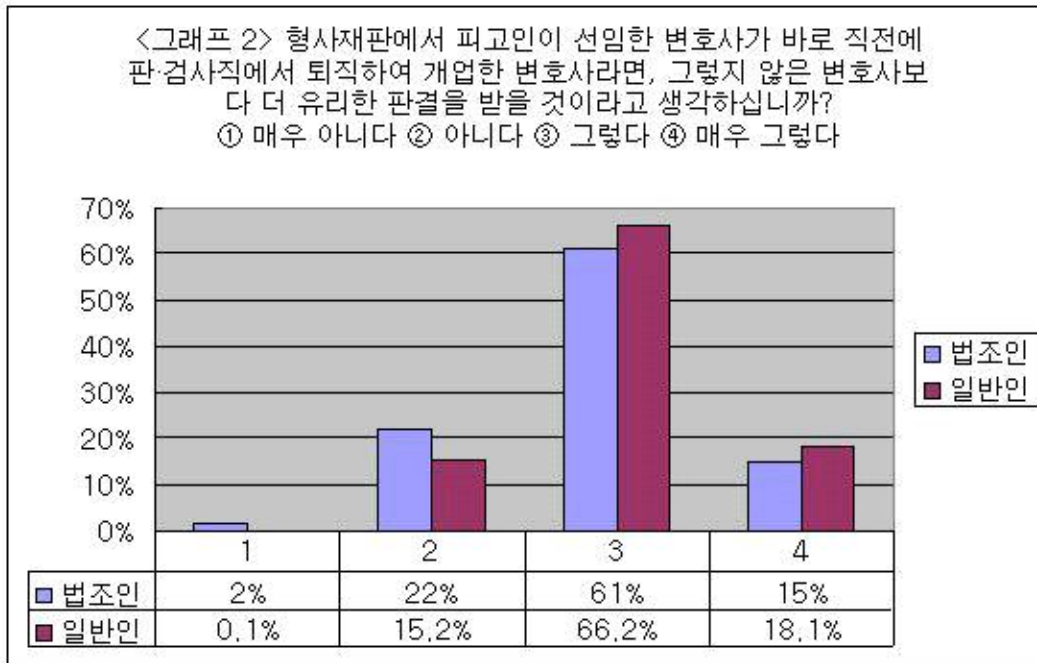
## 법조인 73%가 “재판 공정하지 않다” 80%가 “두산총수 불구속기소 문제있어” 노회찬 의원, 법조인 378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인 37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전관예우와 검찰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노의원실에서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공정하지 않다 33명(9%), 공정하지 않다 243명(64%), 공정하다 95명(25%), 매우 공정하다 7명(2%)로, 사실상 **법조인 276명(73%)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래프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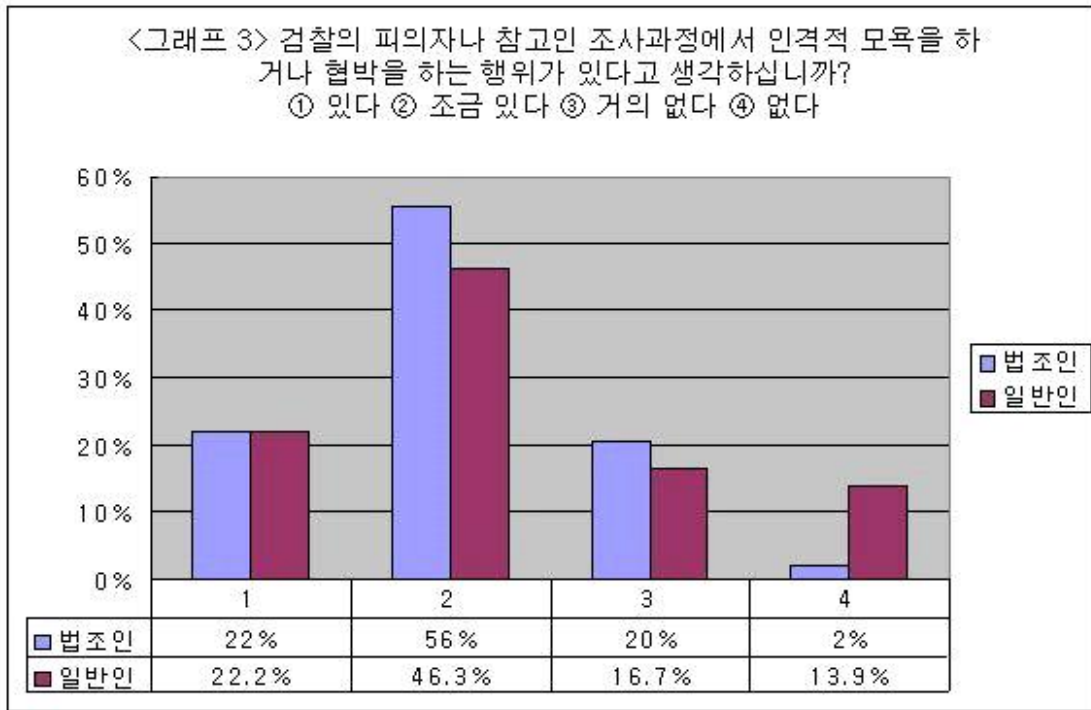


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바로 직전에 판·검사직에서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라면,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아니다 7명(2%), 아니다 83명(22%), 그렇다 232명(61%), 매우 그렇다 56명(15%)로 **법조인들 76%가 전관예우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래프 2 참조>



전관예우 설문결과와 관련하여 노의원은 “정상명 후보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더니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반국민은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법조인들까지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한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있다 7명(2%), 조금 있다 78명(21%), 거의 없다 235명(62%), 없다 58명(15%)로 **아직도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에 대해 85명[23%]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검찰의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인격적 모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있다 83명(22%), 조금 있다 210명(56%), 거의 없다 77명(20%), 없다 8명(2%)로 사실상 **293명[78%]이 아직도 조사과정에서 인격적 모욕이나 협박의 형태가 있다는 응답**을 했다. <그래프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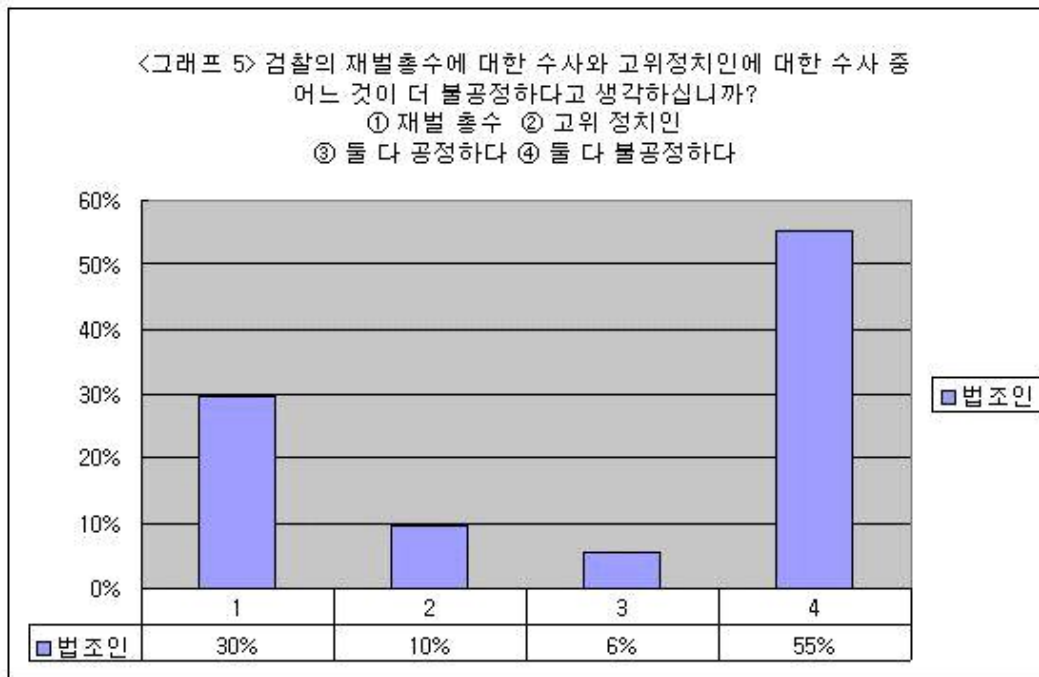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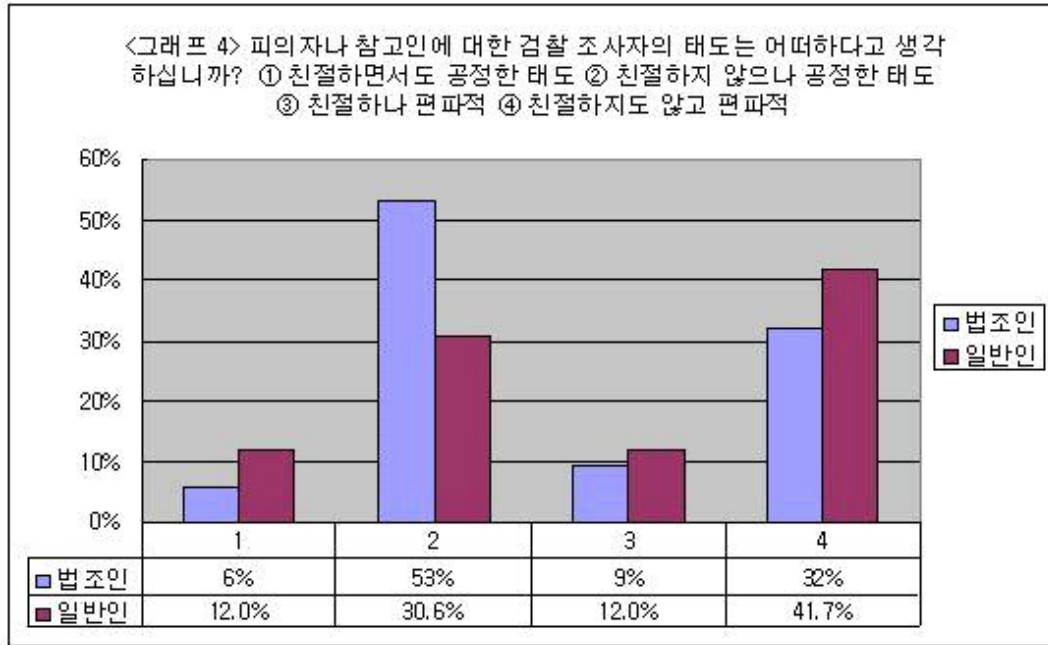


이와 함께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친절하면서 공정한 태도 21명(6%), 친절하지 않으나 공정한 태도 201명(53%), 친절하나 편파적 35명(9%), 친절하지도 않고 편파적 121명(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친절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태도에 대한 견해 53%와 친절하지도 않고 편파적이라는 응답이 32%를 보여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검찰의 일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의 조사태도가 대체로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래프 4 참조>

또 ‘검찰의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와 고위정치인에 대한 수사 중 어느 것이 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가 더 불공정하다 112명(30%), 고위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더 불공정하다 36명(10%), 둘다 공정하다 21명(6%), 둘다 불공정하다 209명(55%)으로 **둘다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55%로 가장 높았으나, 정치인보다 재벌총수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비율이 20%나 상회한 것으로, 최근 재벌총수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그룹 총수 일가 전원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서 법조인들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 303명(80%), 국익

을 고려한 결정 75명(20%)로 **80%의 법조인들이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답했다.** (그래프 5 참조)



노의원은 지난 11월 11일부터 5일간 현직 변호사, 관사, 검사 1,500여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전관예우와 수사과정의 인권문제, 검찰개혁에 대한 현안 등의 여론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응답은 378명으로 회신율은

25%였으며 의원실 자체분석에 따른 것이다.

\* 일반인 설문조사 자료출처 \*

<그래프 1>과 <그래프 2> : 2003년 12월 <사법서비스,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그래프 3>과 <그래프 4> : 2005년 9월 여의도 리서치, 이원영의원실 <검찰의 수사관행에 관한 여론조사 보고서>